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적 극 행 정 운 영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를 면책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규모를 45명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감사원·교육부·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9. ~ 7.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적극행정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이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을 “위원회를”로, “지원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들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5. 제15조 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15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을 “위원회 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을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소속 부서장”으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지원위원회 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부여”를 “부여.”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지급 대상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시·도 감사기구의 장(시·군·구에 한한다)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파견받은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영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이전의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u>적극행정 지원위원회</u> (이하 “ <u>지원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	----- ----- ----- ----- -- <u>적극행정위원회</u> (이하 “ <u>위원회</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에 따라 <u>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u>	2. ----- <u>위원회</u> ----- -----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제15조 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지원위원회</u> 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 <u>인사위원회</u> ”라 한다)가 <u>지원위원회</u> 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② ----- <u>위원회를</u> ----- ----- ----- ----- ----- ----- <u>위원회</u> 의 -----.

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
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
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2. (생 략)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
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신 설>

-----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 45명 -

-----.

② 위원회-----

-----.

1.·2.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
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
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
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

원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
른 구성원 -----

----- . 다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 제6항까지 -----

-----.

⑥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 또는 소속 부서장

----- 위원회 -----

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 위원회의 -----

-----.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
---- 위원회-----

-----.

② -----

위원회-----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수공무원 선발에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2. (생략)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후단 신설>

4. ~ 8. (생략)

②·③ (생략)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지급 대상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시·도 감사기구의 장(시·군·구에 한한다)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원회-----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생략)

<신설>

-----.

----- 위원
회-----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

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파견받은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소속 기관의 장은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	
연 락 처	(044) 205 - 3492